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산불현장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9급 5명)을 증원하여 평가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 개장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권역별”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장 및 남부권”으로 한다.

제6장의2에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관할구역)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25”를 각각 “835”로, 임업주사보 및 임업서기보 “27”을 각각 “32”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32”를 각각 “842”로, 임업주사보 및 임업서기보 “27”을 각각 “32”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9”를 각각 “100”으로, 5급 이하 “98”을 “99”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가목의 정원란 중 “86명”을 “96명”으로 하고, 같은 란 중 “27명, 9급 27명”을 “32명, 9급 32명”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관할구역(제16조의3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권역별 산불방지센터) ① <u>권역별</u>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생 략) <u><신 설></u>	제16조의2(권역별 산불방지센터) ① <u>동해안 산불방지센터장 및 남부권</u> ----- -----. ②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3(관할구역)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관할구역은 별표 13과 같다.</u>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25</u>	<u>835</u>	+10
일반직 계	<u>825</u>	<u>835</u>	+10
·	·	·	
·	·	·	
임업주사보	<u>27</u>	<u>32</u>	+5
·	·	·	
·	·	·	
임업서기보	<u>27</u>	<u>32</u>	+5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32</u>	<u>842</u>	+10
일반직 계	<u>832</u>	<u>842</u>	+10
·	·	·	
·	·	·	
임업주사보	<u>27</u>	<u>32</u>	+5
·	·	·	
·	·	·	
임업서기보	<u>27</u>	<u>32</u>	+5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9</u>	<u>100</u>	+1
일반직 계	<u>99</u>	<u>100</u>	+1
·	·	·	
5급 이하	<u>98</u>	<u>99</u>	+1